

# 여성의 사회참여를 막는 것은

95.10.14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세계 화추진위원회가 내놓은 10대 시책은 주로 고등교육을 받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노동인력으로 활용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가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집안노동이나 출산으로 인한 비용을 분담하고 사회적으로 뿌리깊은 남녀차별 인식을 씻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것이 세 추위안의 뼈대이다. 공공부문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일정한 비율에 이를 때까지 고용할당제를 도입한다든지 취업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 등이 검토되고 있고,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제정으로 사회 전반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성차별적 요소를 고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가왕에 우리나라에는 장애자고용촉진법이나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이 있으나 그것이 강제규정이 아닌 탓에 사문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법을 개정하는 단계에서 정부가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느냐에 이 시책의 성공적인 정착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여성계에서 환영하고 있는 세추위안은 사회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집안노동을 아이를 키우고, 부엌일과

빨래를 하는 등으로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취업여성들이 직장가정에서 이중의 어려움에 놓여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인식되어 온 가족관계에 따른 의무 때문이다. 세추위가 여성을 집안노동에서 해방시켜 사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택아나 공동육아시설 지원, 혹은 초등학교의 전면적인 급식실시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노인문제나 오래 앓는 환자를 돌보는 문제 등 가정에서 여성에게 지워진 의무의 무게를 두고는 단순히 여성에게 기회를 조금 더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기본시설과 의료복지시설 기반이 없으면 여성의 사회참여가 여성에게 이중삼중의 노동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란 여차피 전통적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세계화를 위해 여성을 활용해야 한다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지운 의무를 분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제반여건을 우선적으로 세계화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또는 모자가정 등 취약한 여성층에 대한 배려나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 등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것도 세추위안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